

2019년 하반기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안내문

1. 서류 제출 기간 및 접수처 안내

◆ 제출기간 : 2019년 10월 16일(수) ~ 10월 29일(화) 18:00

◆ 접수처 :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청파동 2가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721호 김민지 교수님(범죄심리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 서류봉투 겉면에 “범죄심리사 자격관리 위원회” 와 “범죄심리전문가 심사서류 재
중” 반드시 기재

* 꼭 제출기한 내에 본 기관이 서류를 수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제출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류를 보내시기 전에 모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확인 은 서류 접수 기간 종료 이후 일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확인요청에는 회신메일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1)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에 가입

- 한국심리학회 <http://www.koreanpsychology.or.kr/>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분과학회(사회및성격)도 가입 가능)

- 두 학회 모두 정회원 이상 가입

- **서류 제출 시, 학회비 입금 확인증 필히 동봉(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영수증도 인정)**

-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심사 불가

2) 이력서 1부 (특히 **영문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사진부착)

3) 최종학력증명서(현재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최종학력의 성적증명서로 면제과목시간이 부족한 경우, 석사/학부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성적증명서 :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 40시간 외에 20시간의 면제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목명이 상세히 나온 것을 첨부, 아래에 기재된 면제대상과목과 수업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 커리큘럼을 자격관리위원회로 보내주신 후 인정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면제대상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도 면제가능함

- 면제과목시간은 전문가 교육에 따라 20시간 이수(과목 중복인정 불가)

* 면제대상과목(인정시간) : 범죄심리학(6), 법심리학(6), 사회심리학(6), 심리평가(6)
상담심리학(6), 성격심리학(3), 발달심리학(3), 이상심리학(3),
임상심리학(3), 범죄학(3), 법학개론(3), 형사정책(3)

4) 범죄심리전문가 교육 이수증 (교육 영수증 또는 수료증 원본)

5) 수련시간인정 조건

- 아래의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 수련을 하신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 ② 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2. 심리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 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3.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 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이상)의 시간제 근무

무경력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

*** 범죄관련, 범죄심리 관련 영역 : 범죄관련 실습기관인 교정기관, 범죄수사기관, 범죄예방기관, 등 범죄관련 영역과, 사회심리, 성격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발달심리 분야 등을 말하며,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6) 수련내용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 1) 대상자에 대한 보고서로 증명할 수 있음(1사례 당 4시간 인정)
- 2) 대상자는 범죄와 관련된 자이어야 함(ex. 범죄가해자, 피해자 등)
- 3) 1급 수련생들에 대한 슈퍼바이징의 경우, 슈퍼바이징한 보고서 파일 제출.
- 4) 교육이나 강의는 인정되지 않음.

5) 보고서 파일은 기관별로 CD 혹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예) A 경찰서, B 교도소에서 실습 및 수련한 경우,

폴더 **2개**(A경찰서, B교도소)

각 폴더(기관)별로 파일명 작성: 면담날짜_대상자명 (예, 20100507_홍길동)

* 반드시 도장 혹은 서명 첨부

*** CD 혹은 USB 오기록 및 오작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원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전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8) 학회참석시간

- 1)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50시간 이상 참석
학회의 성격과 학회의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상이함.

구체적으로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토론 이외의 워크숍, 사례발표회, 공동교육(강의)는 학술참석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①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 전일 6시간, 반일 3시간으로 인정 가능
- ②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중 프로그램 세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 전일-6시간, 반일-3시간으로 인정 가능
- ③ 한국심리학회 이외의 범죄 관련 학회 학술대회 중 프로그램 세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 전일-4시간, 반일-2시간으로 인정 가능

※ 학회참석 인정시간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 인

정시간을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학회참석 영수증 또는 학회참석 확인증은 반드시 **원본 제출(영수증 반환 불가)**

9) 범죄심리사 자격심사 신청서

수련수첩 원본 제출 혹은 출력본 제출 모두 인정.

본인 및 감독자의 도장 혹은 서명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서류양식

- 범죄심리사 다음 카페의 자료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격심사 안내문과 함께 기본적인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인준료**는 추후 심사에 통과한 분들에게 개별 공지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 범죄심리사 자격관리 위원회 이메일 : crime2008@hanmail.net